

이달의 초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쟁점과 정책과제

|이주연|

자립준비청년의 가정위탁 경험과 과제

|이정은·이주연|

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 탐색과 과제

|임성은|

가정 밖 청소년 탈시설의 쟁점과 과제

|김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자립준비청년의 가정위탁 경험과 과제¹⁾

Foster Care Experiences of Youth in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은 가정위탁을 경험하고 자립한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위탁 기간 중 고려되었어야 할 쟁점들을 확인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가정으로의 진입과 이동, 서비스의 이용과 사각지대, 원가정 복귀와 위기 등의 과정을 확인하고 가정위탁제도의 쟁점과 한계를 점검함으로써 위탁아동들의 장기적 변화를 관찰하는 지원체계와 함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2020년 정부는 시설보호의 단계적 폐지와 가정에 기반한 아동보호 촉진에 관한 유엔아동권고안을 수용하여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아동보호 체계의 중심축을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로 이동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

로 올리고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 가정보호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등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아동이 보호되는 물리적 공간을 시설에서 가정으로

1) 이 글은 이주연, 이정은, 이상정, 조정우, 김희진. (202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장 제2절 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하였다.

변화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정위탁제도의 목적이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 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보건복지부, 2023)’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가정위탁의 활성화는 보호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위탁가정에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과 보호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보장·확대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 보호율로 확인되는 배치율 변화에 비해 위탁가정으로 배치된 아동들이 경험하는 지원체계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예산은 지자체에 이양되어 정부가 제시한 권고안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공식적 통계조차 부재하며(이재혁, 2022; 이현정, 2019),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상담원 1인당 평균 84명의 아동을 담당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연 외, 2023). 위탁가정으로 배치된 이후 보호대상아동이 경험하는 위탁가정 지원체계의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한계 등에 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이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 위탁아동 지원 체계를 확인하는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하

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은 평균 8년 7개월의 위탁 기간을 거쳤으며, 이들의 약 66%가 성인이 된 이후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연장보호 종결 및 만 18세 이상 종결)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즉 가정위탁 아동들이 생애 상당 기간을 위탁가정에서 보내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경험하는 총체적인 삶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가정위탁 이후 자립했거나 자립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가정위탁 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생애 사건과 경험들을 확인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뷰에서 만난 청년들이 경험한 위탁가정에서의 정착과 성장 그리고 자립에 이르는 삶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이들이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가정으로의 진입과 이동, 서비스의 이용과 사각지대, 원가정 복귀와 위기 등의 과정을 확인하고 가정위탁제도의 쟁점과 한계를 점검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위탁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터뷰 참여자의 주요 특성²⁾

인터뷰 참여자는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조부모 외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위탁, 비혈연 위탁인

2) 연구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주연 외(2023)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의 제4장 제2절을 참고하길 바란다.

일반위탁을 경험한 총 11인의 자립준비청년이다.³⁾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혹은 연장보호 종료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

는 청년을 의미하는데(관계부처 합동, 2021), 인터뷰 참여자들은 가정위탁을 3년 이상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으로 한정하였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소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이 연구 목적에

[표 1] 인터뷰 참여자의 주요 특성

ID	연령	학력	보호 종료 여부	거주 형태	위탁 유형			위탁 기간 ¹⁾	위탁 사유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A1	27	4년제 대졸	연장보호 종료	단독 거주 (LH 임대주택)	○			16년	친부모 이혼
A2	23	4년제 대재	연장보호 종료	단독 거주 (LH 임대주택)	○			18년	친부모 이혼
A3	24	2년제 대졸	연장보호 종료	단독 거주(월세)	○			12년	친부모 이혼
A4	26	4년제 대졸	연장보호 종료	단독 거주 (LH 임대주택)	○	○		16년	친부모 가출 경제적 어려움 양육자 사망
A5	26	4년제 대졸	연장보호 종료	단독 거주 (LH 임대주택)		○		22년	경제적 어려움
A6	23	4년제 대재	연장보호 종료	단독 거주 (LH 임대주택)		○		20년	친부모 이혼
A7 ²⁾	22	4년제 대재	보호 종료	단독 거주 (LH 임대주택)		○		4년	친부의 학대
A8	25	4년제 대졸	연장보호 종료	단독 거주(월세)		○	○	12년	친모의 가출 가정폭력
A9	24	2년제 대졸	연장보호 종료	단독 거주 (LH 임대주택)			○	17년	친부 사망
A10	23	4년제 대졸	연장보호 종료	단독 거주 (LH 임대주택)			○	22년	가정폭력 친모의 가출
A11	22	4년제 대재	연장보호 중 (14개월 뒤 종료)	위탁가정 거주			○	16년	친부모 이혼 조모 방임

주: 1) 보호 종료 이전에 원가정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보낸 기간을 의미하며, 복수의 위탁가정을 거친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낸 총기간을 합산한 값임. 연장보호 기간을 합산한 값임.

2) 가정위탁 해제 이후 시설에 입소하여 4년간 생활 후 보호 종료함.

출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이주연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5>와 <표 4-17>을 재구성하여 제시함.

3) 2021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정위탁의 유형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위탁의 분류체계는 일반가정위탁에 포함되어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개정 이전의 가정위탁제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인터뷰 결과 기존 위탁 유형에 따른 차별적 경험들이 존재함에 따라 이전 분류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문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이나 위탁의 목적이 일반가정위탁과 상이함에 따라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부합한 참여자를 의도적 표본(Purposive Sample) 방식으로 섭외하였으며, 2023년 8월 4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모든 진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었다(제2023-0094호).

인터뷰 참여자들을 위탁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조부모에게 위탁되어 대리양육위탁을 경험한 참여자가 4인이었으며, 친인척위탁 경험자가 5인, 일반위탁 경험자가 4인이다. 이들 중 2인의 참여자는 중도에 위탁가정을 이동한 경험이 있었으며, 각각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 친인척위탁과 일반위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인의 참여자(A7)는 가정위탁은 아니지만 친인척위탁 해제 이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다.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자들의 연령은 22~27세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졸업(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장보호 종료를 앞둔 1인의 참여자를 제외하면 모두 보호 종료된 상태로, 독립하여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친인척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A3)와 구직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자취 중인 참여자(A8)를 제외하면 모두 보호 종료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지원받아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소 4년에서 최대 22년, 평균 15.7년을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의 배경에는 원가정의 이혼이나 친부 혹은 친모의 사

망, 가출 등에 의해 원가정 보호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방임, 학대 등 가정폭력의 경험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위탁의 경험

가. 위탁가정으로의 진입과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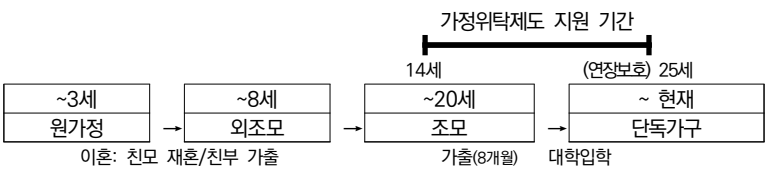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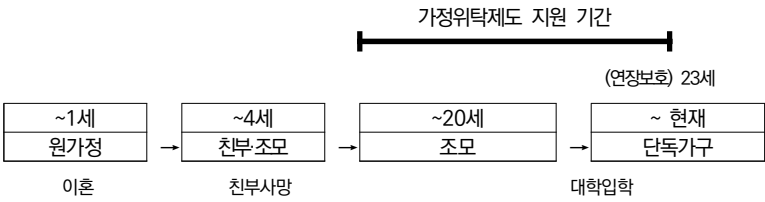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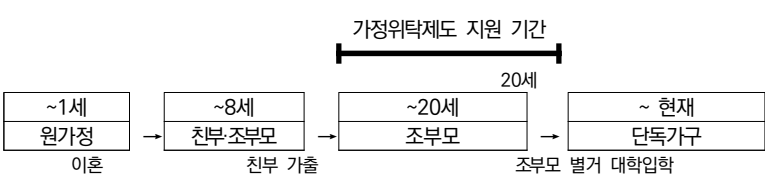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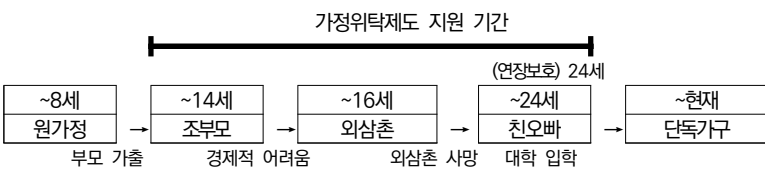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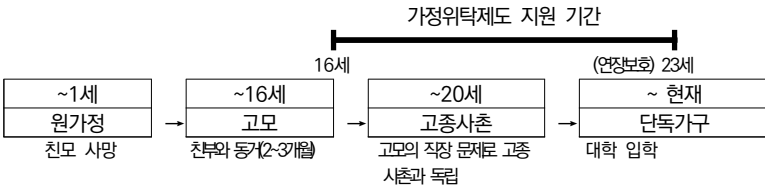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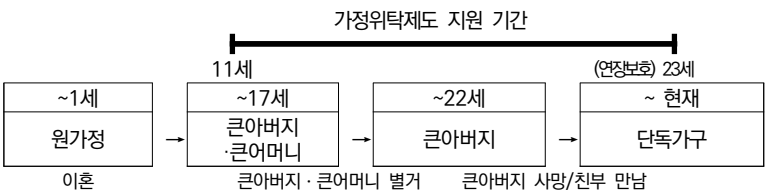
인터뷰 참여자들이 경험한 가정위탁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립 이전까지 경험한 위탁 경로를 도식화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위탁가정을 포함한 참여자들의 이동을 중심으로 이동의 사유 및 생애 주된 사건과 함께 실제 위탁가정에서 거주한 기간과 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이 불일치한 참여자를 고려하여 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 중 일부는 공식과 비공식 보호체계를 넘나들거나, 공식과 비공식 각각의 보호체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가 변경되거나,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등 중도에 가정위탁이 해제(변경)되는 사건을 겪었으며, 일정 기간 위탁부모와 별거하거나 가출 등을 경험한 참여자도 있었다. 우선 참여자들 중 상당수는 공식적인 위탁가정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거나 친인척 집을 이동하는 등 비공식적인 친족돌봄의 기간을 가진 후 공식적인 위탁가정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공식적인 위탁가정은 아니었으나 친부모의 이혼 이후 일정 기간 외조모의 집에서 거주한 경험 이 있거나(A1, A11), 고종사촌이나 외삼촌 등 친 인척과 함께 거주하며 이동한 참여자(A7, A8, A9) 가 확인되었다. 공식적인 위탁가정에 진입한 이후 에도 위탁가정의 이동과 변경을 겪은 참여자도 있 었다. 위탁가정의 변경이 가장 잦은 참여자(A8)의 경우 친부 사망 이후 고종사촌의 위탁, 동생과 단독 거주, 친인척(외삼촌 가족)과 함께 거주, 원가정 복 귀를 거쳐 일반위탁되었으나 위탁이 해제되어 단기 보호시설과 원가정 복귀를 거쳐 재위탁된 후 보호 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참여자(A4)는 조부모가 위탁부모가 되어 가정위탁이 시작되었으 나 양육 과정에서 조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 어 먼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외삼촌)으로 위탁가 정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외삼촌의 사망으로 인해 성인이 된 오빠가 위탁부모가 되어 오빠의 가정으 로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가정위탁으 로 고모의 가족과 생활하다가 위탁을 해제하고 단 기쉼터를 거쳐 양육시설로 이동한 참여자(A7)는 가정위탁에서 시설로 보호 유형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종료했 으나, 위탁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별도의 거주지에 서 2~3년의 청소년기를 보낸 참여자(A5), 위탁부 모 누나의 가정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생활한 참여자(A10), 위탁부모의 별거로 위탁부와 따로 생활한 참여자(A6), 위탁 기간 중 8개월가량 위탁 가정에서 가출한 참여자(A1)도 확인되었다.

가정위탁 과정에서 위탁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 한 위탁가정의 변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인 터뷰 참여자들의 경우 위탁부모의 개인적·경제적 사정, 위탁부모와의 갈등 등이 위탁 해제나 변경의 사유가 된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이러한 변경 과정 에서 아동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변경의 충 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했고, 아동의 안전 역시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 변경 시 친인척들의 합의로 결정, 통보되거나(A4), 스스로 보호기관을 찾아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A7). 위탁 해제 과 정에서 원가정으로 돌아간 참여자(A8)는 또다시 가정폭력을 경험하여 결국 재위탁되는 아동을 보 내게 되었다. 재위탁 이후에는 위탁부모와 함께 거 주하는 것이 아닌 위탁부모 주거지 근처에서 독립 적인 생활을 했다는 점 역시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다. 위탁아동의 보호 계 획을 수립하는 데 위탁보호의 영구성(permanency) 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 안정적인 대안을 찾기 어 렵으며, 대안적인 조치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렵 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위탁가정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했거나 원가정 복귀에 실패하는 등의 사유로 여러 위탁가정 혹은 시설을 전전하는 것을 표류(drift)라고 표현하며, 보호아동이 4~5번까지 위탁가정을 옮기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오정수, 정익중, 2008).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에서 위탁가정의 잦은 변동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표 2] 인터뷰 참여자의 위탁가정 이동 경로

ID	위탁 유형			위탁 경로
	대리 양육	친인척	일반	
A1	○			<p style="text-align: center;">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p> 
A2	○			<p style="text-align: center;">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p> 
A3	○			<p style="text-align: center;">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p> 
A4	○	○		<p style="text-align: center;">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p> 
A5		○		<p style="text-align: center;">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p> 
A6		○		<p style="text-align: center;">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p> 

ID	위탁 유형			위탁 경로
	대리 양육	친인척	일반	
A7		○		<p>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 (해제) 16세</p>
A8		○	○	<p>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 (연장보호) 24세</p>
A9			○	<p>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 (연장보호) 23세</p>
A10			○	<p>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 (연장보호) 22세</p>
A11			○	<p>가정위탁제도 지원 기간 (연장보호 중) 24년 종료 예정</p>

출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이주연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6>-<표 4-16>에 해당되는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함.

점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위탁가정의 변화와 그 경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 서비스 이용과 사각지대

앞서 그림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인터뷰 참여자들 일부는 실제 위탁가정에서 거주한 기간과 위탁가정으로 공식적인 지원을 받은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⁴⁾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혈연 기반 위탁 상태였던 3인의 참여자(A1, A5, A6)는 위탁가정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공식적인 위탁가정 지원체계로 진입했음을 확인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03년에 도입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제도화 초기에 나타나는 미인지 혹은 미발굴에 의한 사각지대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혈연관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작된 위탁이었다는 점에서 혈연 기반 위탁가정이 공식적인 위탁가정 지원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대한 안내나 홍보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위탁가정이 지정되면 위탁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2023년 기준으로 기본 사례의 경우 연 4회 이상 대면상담을 제공하고, 통합사례의 경우 월 1회 이상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가정 복귀나 보호 조치의 변경, 종결 시에는 적응을 위한 임상심리치료를

비스 등이 사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담의 횟수나 제공 방식이 과거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많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인해 위탁가정과 아동들의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20대 초중반인 인터뷰 참여자들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했던 시점에 제공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의 양이나 질은 더욱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 인터뷰 참여자들이 보호 종료 이전에 정기적 상담 등을 포함한 사례관리를 받은 경험은 부족했다. 특히 혈연관계에 기반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에 해당되는 참여자들의 사례관리 경험은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연가정위탁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경우 위탁아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조부모나 친인척 돌봄을 받는 상황으로 판단했거나(A1, A4, A6), 위탁아동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담당자를 만났거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는 참여자(A2, A5)도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위탁가정이 변경되거나,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은 참여자들(A8, A7, A9)의 경우 사례관리 담당자를 만나 정기적 상담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위탁 기간 중 정기적인 상담이나 위탁아동 대상 프로

4) 공식적으로 위탁 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실제 위탁 기간이 언제부터였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점부터 가정위탁제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램을 이용했던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만족도나 도움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았으나 상담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정서적 교류가 불가능했으며, 상담자의 정보 제공 수준도 낮았다고 평가하거나(A8), 정기적 상담이 가정 내 방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위탁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던 방임이나 갈등에 관한 문제를 표출하기 어려웠다는 참여자(A7)도 있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었던 참여자들(A3, A9)의 경우 오히려 위탁아동에 대한 낙인을 경험했거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음을 지적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인터뷰 참여자들 중 다수가 위탁아동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공식적 안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특히 혈연위탁의 경우 위탁아동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일부 참여자는 위탁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위축되거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이른 시기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충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위탁아동 관련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이용한 참여자들 역시 경제적인 지원에 관한 정보는 안내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아동으로서 받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위탁부모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일부 일반위탁 참여자(A8, A11)들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었다. 물론 혈연위탁을 경험한 참여자(A7)의 경우에도 위탁부모가 통

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일반 위탁 경험자(A9)였으나 보호 종료 이후 취업 시점에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즉 위탁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 주체는 부재했으며, 정보 제공의 수준과 내용은 위탁부모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위탁아동의 정보 부족은 자립 시점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위탁아동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참여자들은 보호 종료 시점에 도달했음에도 등록금이나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A2, A4, A5, A6). 또한 이러한 점은 해당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시점에 위탁부모와의 불필요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보호 종료 시점에 도달한 이후 알게 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보로 인해 위탁부모를 원망하거나, 실제 갈등으로 이어져 위탁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A2, A3, A5, A9).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가정 위탁 해제 이후 양육시설로 이동한 참여자(A8)의 경우 가정위탁에 비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2배가량 증가했으며, 자립 관련 정보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자립한 이후에야 가정위탁을

경험한 청년들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인식했다는 참여자들(A1, A2)의 인터뷰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 원가정 복귀, 위기와 갈등

가정위탁의 목표는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이다. 아동보호에서 ‘원가정 보호’는 최우선 원칙으로 가정위탁은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아동들은 긴 기간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한 채 위탁가정에 머무르고 있었다. 국내 위탁아동의 평균 보호 기간은 8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혈연위탁아동의 평균 보호 기간은 9년을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가정 복귀로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경우는 13.5%에 지나지 않고, 위탁아동의 절반 이상은 성인이 된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인터뷰 참여자들은 평균 15.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위탁가정에 머무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보호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위탁 기간 중 원가정 복귀에 대한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친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 위탁 기간 동안 원가정과 교류가 없었으며(A4, A6, A7, A9), 친부모와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원가정에서 위탁아동을 보호할 의사는 없었다고 평가했다(A1, A2,

A3, A10). 위탁 기간 중 원가정에 복귀했거나(A8), 원가정 복귀를 준비해 보았거나(A5), 원가정 복귀를 제안받은(A11) 참여자들의 경험도 확인되었다. 원가정에 복귀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참여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위탁이 해제된 이후 원가정으로 돌아갔으나 최초 위탁 사유였던 가정폭력의 재발로 재위탁되었다(A8). 원가정 복귀에 앞서 위탁가정에서 친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친부의 알코올, 정신적 문제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친부가 사망할 때까지 교류하지 않은 참여자도 확인되었다(A5). 한편 원가정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했으나 불안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은 참여자의 거절로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탁가정과 참여자가 희망하는 입장을 원가정에서 거부함에 따라 위탁아동으로 남게 된 사례도 확인되었다(A11). 이들의 경험은 원가정의 변화와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공식적 지원체계가 부재하며, 아동이 복귀할 수 있는 원가정의 조건과 환경을 진단할 때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위탁아동이 장기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게 됨에 따라 위탁아동들은 위탁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우 위탁가정의 출산, 위탁부모의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생애 주요 사건과 함께 위탁부모의 갈등과 별거, 위탁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

한 다양한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위탁가정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상이하지만, 위탁가정 내의 갈등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가정 내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가정위탁 초기에는 없었던 어려움이 위탁 기간 중에 발생하여 위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공식적 지원은 부재했다고 말했다. 대리양육위탁의 경우 위탁 초기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조부모의 노화로 경제적 상황은 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위탁 해제의 요인이 되기도 했으며(A4), 일부 참여자는 연로한 조부모를 대신하여 가계 생계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나, 조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요구받거나, 자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A2, A3). 한편 일반위탁을 경험한 경우에도 위탁 기간 동안 위탁부모의 사업 실패 등을 경험하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경우가 확인되었는데(A9, A10, A11),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위탁의 상황에서 경험한 경제위기는 위탁이 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A9). 그 밖에 인터뷰 대상자들은 위탁가족 안에서 소외와 갈등을 경험하거나, 위탁부모의 질병으로 간병을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

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마치며

이 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정위탁 기간 동안 경험한 위탁가정으로의 진입과 이동, 서비스의 이용과 사각지대, 원가정 복귀와 위기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위탁 아동이 긴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들의 장기적 변화를 관찰하는 촘촘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정위탁제도이지만 실제 위탁의 기간은 길었고 위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와 위기의 상황들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일부 위기의 상황은 위탁의 해제를 야기하거나 위탁아동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꾸준히 점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체계는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위탁가정 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아동들의 삶의 과정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위탁가정의 갈등, 경제적 변화 등을 포함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례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아동이 안전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위탁가정을 이동하며 표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변동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변동 시 이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을 일시적인 보호 조치로 제한하고, 위탁아동에 대한 영구적 보호가 가능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상 영구성 계획 단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탁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체계의 세부적 내용을 인지하고 활용한 경우는 적었다. 이용한 경우에도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가정 아동의 서비스 이용률이나 정부 지원 경험률이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낮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이상정, 2020; 주해란 외, 2022)와 일치한다. 여전히 혈연위탁의 비중이 높은 가정위탁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충분한 정보 제공은 위탁아동들의 자립을 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으며, 위탁부모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부모와 아동이 함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Kinship Navigator Program은 친인척 위탁가정과 후견인 가정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와 같이 위탁가정과 아동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채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주연 외, 2023).

셋째, 위탁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탁아동은 발달 단

계에 따른 어려움에 각자 당면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의 생애주기별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아동들의 성장 과정과 욕구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탁가정의 유형, 아동의 연령과 성별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위탁가정의 선정과 원가정 복귀의 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혈연위탁가정에서 관찰된 경제적 어려움은 위탁아동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결국 위탁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 역으로 위탁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의 최우선 목표가 원가정 복귀이나 성급한 원가정 복귀보다는 원가정 복귀를 준비하는 별도의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가정 복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친부모의 양육 의지를 제고하고, 원가정의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 친부모의 취업활동 지원, 친부모의 양육 기술 교육,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기술 교육 등 친부모와 원가정의 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㉞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1.7.13.).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

년) 지원강화 방안: 더 나은 내일로 함께 내딛는 첫발.

- 보건복지부. (2023).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오정수, 정익중. (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 이상정. (2020). 가정외보호아동의 자립준비 경험과 실태 I. **동광**, 115, 28-61.
- 이재혁. (2022. 10. 20.). 조손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자체마다 최대 3.3배 차이...“국고지원 사업 전환 필요”. **메디컬투데이**.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68690440670>
- 이주연, 이정은, 이상정, 조정우, 김희진. (202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정. (2019. 11. 27.). 표 안 되는 위탁아동... 정부도 지자체도 “내가 챙겨라”.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28012005>
- 주해란, 길건혁, 이예진, 안태구. (2022).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성장 환경에 따른 정서적 경험과 지원정책 비교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9(10), 141-176.

Foster Care Experiences of Youth in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Lee, Jungeun

Lee, Juye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rawing on interviews with youth living on their own who have had firsthand experience growing up in foster family settings, this article identifies issues in foster care that need addressing and discusses what needs to be done to better support the healthy development of foster care children. The interviewees' experiences cover various aspects of foster care life: placement with foster families, transitioning between families, access to placement support and case management services (or lack thereof), returning to their biological families, and navigating crisis situations. We discuss the issue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foster family system and present the need for establishing, as part of case management, monitoring of changes in the lives of children in foster care and enhancing accessibility to support services.